

[홈](#) > [뉴스](#) > [뉴스종합](#) > [기획 | 기획뉴스](#)

## “하도대지급보증서 30일 내 발급 명문화를”

### 건설정책연 “발급률 40%도 안돼… 미교부시 벌금 신설” 제안

2014년 02월 10일 (월)

이시봉 ✉ [sblee27@kosca.or.kr](mailto:sblee27@kosca.or.kr)

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‘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성화’ 보고서를 내놨다.

연구원의 ‘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’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률은 90%를 상회하나,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교부율은 4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.

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한을 명시(30일 이내 발급)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 역시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
특히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을 삭제해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증기관의 약관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 규정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.

이밖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,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로 보증기간을 명시토록 제안했다. /이시봉 기자